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1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6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6
2. 제정안의 구성	7
3. 제정법안 전반에 관한 검토	8
4. 제21대국회 공공의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0
5.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3
1. 목적 및 법인격(안 제1조, 제4조 등)	13
2. 조직(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6
3.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학생 선발 등(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19
4.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안 제22조 및 제23조)	21
5. 교육·실습기관(안 제25조)	25
6. 의무복무(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27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71인
- (2) 제 안 일 : 2024. 7. 2.
- (3) 회 부 일 : 2024. 7. 3.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 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医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1)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함.
-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 4) 학교의 장(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
- 5) 이사(임기 2년), 감사(임기 3년), 이사회(이사장, 구성 및 기능)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함.
- 6) 교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및 징계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함.

다.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1)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음.
- 2)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과정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3) 입학자격, 학생선발 방법 등을 규정함.
- 4) 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 5)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라. 공공의 양성 및 지원(안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함.
- 2)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함.
-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함.
- 4) 의무복무 실적 보고의무 및 매년 총장의 졸업생 실태 파악 의무를 규정함.
- 5)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 및 국제기구 파견 우선 선발 근거를 둠.
- 6)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함.
- 7)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8)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10)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Ⅱ.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최근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와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제정안의 구성

□ 제정안은 본칙 45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본칙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9조(총장)
제2조(정의)	제10조(총장의 선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이사)
제4조(법인격)	제12조(이사회)
제5조(교육이념)	제13조(이사회 기능)
제6조(설립등기)	제14조(감사)
제7조(정관)	제15조(결격사유 등)
제8조(임원)	제16조(교직원 등)
제2장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제17조(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제21조(학생선발)
제18조(교육 및 학위과정 등)	제22조(학비 등의 지원)
제19조(학위의 수여)	제23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20조(입학자격)	제24조(의사면허 부여)
제3장 공공의 양성 및 지원	
제25조(교육·실습기관)	제3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26조(의무복무)	제3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27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제3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8조(의무복무 기관에 배치 등)	제36조(수익사업 등)
제29조(의무복무 지역의 변경 등)	제3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제30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제38조(법인회계 등)
제31조(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예산 및 결산 등)
제32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43조(「민법」의 준용)
제41조(지도·감독)	제44조(과태료)
제4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부칙 (4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3조(경과조치)
제2조(설립준비)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 제정법안 전반에 관한 검토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기 위하여 학비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해소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이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나 필수의료의 공백 등의 문제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¹⁾한바 있으나,

진료거부 등으로 나타난 의료계의 반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 체결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추진 결정」, 2018. 4.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고,²⁾

-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하여도 전공의 사직, 집단 휴진 등의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의료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을 체결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할 것에 합의하였음.

4. 제21대국회 공공의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제21대 국회에서는 동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제·개정안이 6건 발의되었는데 대학의 설립형태(법인으로 설립, 국가기관으로 설립 또는 국립대학 내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등),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법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중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3.12.20.)에서 의결하였으나, 법사위 회부 이후 추가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내역 >

의안번호	법률명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자)
210019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용호의원 (‘20.06.05.)
2100690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	서동용의원 (‘20.06.19.)
21007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기동민의원 (‘20.06.19.)
210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김성주의원 (‘20.06.30.)
210903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김형동의원 (‘21.03.23.)
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강은미의원 (‘23.07.27.)

5.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동 법안 제정 목적 중 상당 부분(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 등)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정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설은 대학설립부터 의사 배출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제정의 실익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과거 공공의대 법안 추진 시 사회적 논란이었던 10년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교육의 질 문제, 학생 불공정 선발 등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확충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효과 불확실, 10년 의무복무의 위헌 가능성, 입학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어, 필수·지역 의료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장래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자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아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필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 법률안 추진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상황 악화

및 사회적 혼란 예상되므로 적절치 않음

- (대한병원협회) 대학설립비, 교직원비, 운영비 등 막대한 국가 예산 소요되나, 양질의 의과대학이 설립·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과거 서남의대와 같은 사태 발생이 우려됨.

공공의대 설립하고 15년 후에야 배출되는 의사로는 현재의 필수·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과대학에 교육 인프라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교육여건과 국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기존 전문의 배치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더 효율적임.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및 법인격(안 제1조, 제4조 등)

- 안 제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법인격)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설립등기)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대학은 해당 기관과 분리되어 별도의 정관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대학의 교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관 예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 또는 보조의 형태로 지원받게 됨.

- 따라서 해당 대학법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입이 적고, 독자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입을 대학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운영의 자율성이 높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는 반면, 운영재원 확보의 안정성이나 교직원 신분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참고로,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

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법인화가 이루어졌음.

□ 다만, 의과대학 신설은 「고등교육법」 상 대학 설립은 교육부장관 인가사항인 점 등을 감안할 때에 국가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별 대학법인 설립은 지방선거가 치러질 시기에 과잉경쟁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의과대학 남설 우려도 제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지난 3월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하고 각 의과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여 발표한바 있고, 증원에 따른 대학별 지원에 대한 계획³⁾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할 것임.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결과>

지역		대 학 명	현 정원	신 청	배 정	'25학년도 정원
수 도 권	서울	서울대	135	365		135
		경희대	110			110
		연세대	110			110
		한양대	110			110
		고려대	106			106
		가톨릭대	93			93
		중앙대	86			86
		이화여대	76			76
	서울		826	365	0	826
	경기	성균관대	40	565	80	120
		아주대	40		80	120
		차의과대	40		40	80

3)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용자를 확대할 계획임(교육부 보도자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2024.3.20.).

지역		대 학 명	현 정 원	신 청	배 정	'25학년 도 정 원
	인천	인하대	49		71	120
		가천대	40		90	130
	경기·인천		209	565	361	570
	수도권 소계		1,035	930	361	1,396
비 수 도 권	강원	강원대	49	2,471	83	132
		연세대 분교	93		7	100
		한림대	76		24	100
		가톨릭관동대	49		51	100
	경북	동국대 분교	49		71	120
	대구	경북대	110		90	200
		계명대	76		44	120
		영남대	76		44	120
		대구가톨릭대	40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124	200
	부산	부산대	125		75	200
		인제대	93		7	100
		고신대	76		24	100
		동아대	49		51	100
	울산	울산대	40		80	120
	전북	전북대	142		58	200
		원광대	93		57	150
	광주	전남대	125		75	200
		조선대	125		25	150
	제주	제주대	40		60	100
	충남	순천향대	93		57	150
		단국대(천안)	40		80	120
	충북	충북대	49		151	200
		건국대 분교	40		60	100
	대전	충남대	110		90	200
		건양대	49		51	100
		을지대	40		60	100
	비수도권 소계				2,023	2,471
합계			3,058	3,401	2,000	5,058

2. 조직(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총장 선출, 이사회 구성, 교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8조(임원)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장과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총장)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총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1명

6. 그 밖에 의학교육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교직원 등)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③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보건의료대학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장으로 총장을 두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총장 선출방식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개정안과 같이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이사회의 선출 및 소관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은 해당 국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모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총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총장 선출 입법례 >

구분	내 용
일반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

	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55조(국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단서 생략>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학생 선발 등(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방식과 교육·학위과정, 학생선발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7조(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학위과정 등)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제5조의 교육이념 및 의학 교육과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 등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1조(학생선발)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2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④ 제2항과 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전형의 방법, 학생정원, 학생선발 일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7조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⁴⁾인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 선발 기준을 정한 안 제21조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사람의 수가 입학자 인원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였음.

□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우선 지자체가 설립하는 대학법인의 경우 시·도별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수를 정확하게 추산할 기준의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검토방법과 담당 기관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역 주민 60% 이상 선발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국가가 설립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단지 소재지라는 사항 하나로 국가 예산이 국민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안 제22조 및 제23조)

-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학비등의 지원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을 반환하도록 하였음.

제22조(학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액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22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만, 제3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을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이하 “학비등”)을 전액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대학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유사한 사례는 존재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가 다른 유사한 처우를 하는 대학과 동등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의사 면허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면 학비 반환이라는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건불이행시 면허도 취소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음.

□ 참고로, 졸업 후 특정 분야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등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경찰대학(경찰공무원)이나 한국농수산대학(농어업 분야 종사)의 경우가 있으며, 이들 사례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음.

<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경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2항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학업 중단 시 반납 의무는 없음(단,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금지)
한국 농수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 및 중도 퇴학, 제적처분 받은 경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제1항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 이행)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제3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학비등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학비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의사면허 취소와 학비반환은 모두 의무복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

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제32조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서는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지나면 의사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책임이 오히려 학비반환 면제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5. 교육·실습기관(안 제25조)

□ 안 제25조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5조(교육·실습기관)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역 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는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상수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해야 함.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는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갇출 것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갇출 것. <u>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갇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u> 가. 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갇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따라서, 안 제25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 하겠으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양질의 임상실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 소요될 재정 규모가 클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지자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한 경우 부속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의무복무(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배치,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지원 및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사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6조(의무복무) ① 제19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시·도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무복무 기관에 배치 등) ① 의무복무의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는 선발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배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의무복무의사가 근무할 지역 및 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 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배치의 시기,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무복무 지역의 변경 등) ① 시·도에 배치된 의무복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배치된 의무복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제27조제1항 각 호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중인 의사의 근무 지역 및 기관을 동일한 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복무의사를 다른 지역의 의무복무 기관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의 파견명령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의사의 파견을 명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근무지역의 변경 및 파견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의무복무기관장”이라 한다)은 의무복무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의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공공보건의료대학 총장은 매년 졸업생 조사를 통하여 의무복무를 포함한 졸업생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관장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생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배치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32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음.

□ 국가가 특정분야 종사 인력양성을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고,

의무복무기간을 살펴보면, 사관학교(4년제)는 10년, 경찰대학(4년제)은 6년, 한국농수산대학(3년제)은 학비 지원기간의 2배로 규정

되어 있으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경우 장교 또는 의무경찰대
원으로서 병역복무기간이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포함되고, 한국농
수산대학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복무기간 현황 >

구분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육/해/공군	육군3	국군간호		
근거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한국 농수산대학 설치법」
설치목적	군 장교 양성	육군 장교 양성	군 간호장교 양성	경찰간부 양성	농어업인력 양성
소관부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경찰청	농림축산 식품부
대학 유형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2년	4년	4년	3년
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간호 학사학위	학사학위 (법학/행정학)	전문 학사학위
졸업자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졸업자 경위 임용	임용 × (의무복무)
의무복무 분야	각군 장교	육군 장교	국군 간호장교	경찰 간부	농어업분야
의무복무 기간	10년 (5년차 전역기회)	6년	6년	6년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군인사법」 제6조제2·3항 및 제7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병역기간 산입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의무경찰대 대원)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등 ⁵⁾	시행령 제12조제2항 ⁶⁾

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의무복무기간(10년)을 학비지원기간(대학 6년, 대학원 4년) 기준 1.7~2.5배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겠음.
- 또한, 제정안은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가 재량 규정이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학비 반환 의무에서도 제외되며, 취소된 면허도 일정 기간 경과 시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시각에서 결국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